

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995. 12.

교육 사회 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5년 12월 19일
-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19일

3. 제 안 이 유

청주, 충주수영장을 신설함에 따라 수영장이 없는 청주북부지역과 충주지역의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함

4. 주 요 골 자

- 현행 충청북도수영장외에 청주, 충주수영장을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수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함
-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영장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함
- 수영장에서 실내수영장은 선수훈련용으로, 실외수영장은 학생 및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원칙을 삭제함

5. 검 토 보 고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 수영장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

본 조례는

청주수영장과 충주수영장 설치가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

제1조 규정 중 "충청북도 수영장(이하 "수영장"이라 한다)"을 "수영장"으로 개정하고

제2조 현행 충청북도 수영장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구분 "별표"로 하고

제4조 장장을 "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" 하던 것을 "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"로 하고

제6조 사용구분을 삭제하여 수영장이 없는 청주북부지역과 충주지역의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자하는 것 등으로서

현행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민체육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개정 조례안 : 별 첨